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45
----------	------

제출년월일 : 2009. 6/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위조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제 도입 필요
- 쓰레기종량제 봉투 재질 및 판매소 지정 등에 대한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과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시 조례와 불부합하는 조문 개정 필요
- 조례 형식 및 용어가 맞지 않는 일부 조문 개정

주요골자

- 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 나. 종량제봉투 재질을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 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고 판매소 지정에 부적당한 경우에 지정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 라. 6개월 이상 규격봉투(납부필증)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봉투판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으로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 판매소 재지정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
- 마. 위조 종량제봉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의2제3항).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폐기물 관리법 제8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5조, 제39조, 제68조제3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20조제1항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5,000천원

- 불법봉투 신고자 포상기준(안 제23조의2 제3항 관련)

포상금 신고대상	신고포상금(만원)
• 불법으로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제작 하는 자	100
• 불법으로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소에 판매하는 자	50
• 불법으로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시민에게 판매하는 자	20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5. 7. ~ 2009. 5. 27.(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자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자원”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중량제실시대상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및 배출시설설치·운영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제2조제7호의 생활계폐기물의 관리(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2. 대행 구역·사업비 및 계약 기간
3.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사항
5.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
6. 차고지·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에 관한사항
7. 기타 계약의 적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중 “제26조” 를 “제25조”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3조” 를 “제39조” 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규격봉투의 제작등) 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의 색상·용량·규격 및 재질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규격봉투를 위탁 제작하는 경우 불법제작, 부정유출 및 재위탁 금지 등 규격봉투 위탁 제작에 따른 사고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규격봉투(공시장생활폐기물용 포대는 제외한다)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시의 수익 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상 또는 무상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를 “제11조제3호에” 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등) ①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기여도 등 지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하여야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적,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는 임시판매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3의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조 또는 유사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하는 경우
 2. 규정요금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규격봉투(납부필증)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판매소 및 지정인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중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를 “판매소” 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 자활, 교육특례자 제외)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당해 위반행위” 를 “해당 위반행위” 로 하고, “제7조제1항” 을 “제8조제1항” 으로 하며 “당해 위반행위가” 를 “해당 위반행위가”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63조제3항” 을 “제68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30일” 을 “60일” 로 한다.

제23조의2 제2항 중 “신고로 인하여” 를 “폐기물의 불법투기 신고로 인하여” 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불법으로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클린사업소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클린사업소장 이 기 용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행정담당 김 상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윤 정 환 (행정 353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폐기물관리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생활폐기물"이라 함은 <u>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자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폐기물</u> 을 말한다. 2. "재활용자원"이라 함은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u> 을 말한다. 3. (생략)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u>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제11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규칙이 정하는 폐기물</u> 을 말한다. 5. "종량제 실시대상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u>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및 배출시설설치·운영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규칙이 정하는 폐기물</u> 을 말한다. 6. (생략) 7.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u>제1호 내지 제6호의 폐기물</u> 을 말한다. 8.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1. <u>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u>	
		2.....	「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u> 」	
		3. (현행과 같음)		
		4.	「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3호에 따른	
		5.	「 <u>폐기물관리법 시행령</u>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삭제>
		6. (현행과 같음)		<삭제>
		7.	<u>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u>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제2조제7호 규정의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안산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한다.</p> <p>③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①.....의 생활계폐기물의 관리(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p> <p>②제1항에도</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생략)</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본다.</p> <p>1. ~ 3. (생략)</p> <p>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p>	<p>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어느하나에에 따른</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p> <p>.....</p>
<p>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에 따른</p> <p>.....</p> <p>.....</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가 시장의 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폐기물 처리 방법, 절차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업자가 대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에게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p> <p>②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p> <p>.....</p> <p>1. ~ 7. (생략)</p> <p>③.....</p> <p>.....</p> <p>.....</p> <p>..... <삭제></p> <p>.....</p>

현행	개정안
<p>제8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8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 ... 제25조....</p> <p>.....</p> <p>.....</p> <p>.....</p> <p>.....</p> <p>.....</p> <p>.....</p>
<p>제9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검사) ①. 제39조</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규격봉투의 제작등) ① ~ ②(생략)</p> <p>③규격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는 제외한다)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표준 1999. 5.17)에 따른 생분해도 환경마크를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④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및 물성등 생분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p> <p>⑤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시의 수익 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상 또는 무상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p>	<p>제12조(규격봉투의 제작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규격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는 제외한다)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p> <p>④ (현행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함)</p>
<p>제13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 필증의 공급 등) ① ~ ②(생략)</p> <p>③시장은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봉투를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④(생략)</p>	<p>제13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 필증의 공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에 따른.....</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p> <p>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p> <p>.....</p> <p>1. (현행과 같음)</p> <p>2.에 따른</p> <p>.....</p> <p>②..... 에 따라</p> <p>.....</p> <p>.....</p> <p>.....</p>
<p>제1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p> <p>다만, 법 제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등) ①.....</p> <p>..... 해당</p> <p>.....</p> <p>..... 제8조제1항</p> <p>..... 해당</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견진술) ①시장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③ (생략)</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p>	<p>제20조(의견진술) ①..... 제68조제3항</p> <p>.....</p> <p>.....</p> <p>.....</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제21조(이의제기)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1조(이의제기) ①..... <u>60일</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의2(포상금 지급) ① (생략)</p> <p>1. ~ 6. (생략)</p> <p>②<u>신고로</u> 인하여 피신고자가 고발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신설></p> <p>③<u>시장은</u> 포상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p>	<p>제23조의2(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u>폐기물의 불법투기 신고로</u></p> <p>③<u>불법으로</u>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845
----------	------

제안년월일 : 2009. 7. 3.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판매소 지정시 불합리한 요소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규격봉투(납부필증)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규격봉투(판매필증)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판매소 지정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4조).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등)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적으로 규격봉투(납부필증)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에게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4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14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 <p>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상시적으로 규격봉투(납부필증)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p> <p>2. 불특정 다수인에게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p> <p>3. 기타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